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1737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천준호의원

찬 성 자 : 160인

주 문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김태규는 “12·3 비상계엄은 물론 전두환 신군부도 내란이 아니다”며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전면 부정하고,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하에 ‘재판 불복’을 노골화하는 법치주의 훼손과 반헌법적 망언을 서슴지 않음.

특히 국회의원 김태규는 헌법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전직 법관

이자 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역사를 부정하고 “저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공직자이자 법관 출신 입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였음.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국민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이자 국민 통합을 도모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채,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을 촉구함.

제안이유

가. 윤석열의 내란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인정되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고, 2026년 2월 19일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수괴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

나.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행위는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된 법적·역사적 사건임. 사법부는 해당 판결을 통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한 점과 “우리 나라의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함. 또한 법원은 이 판례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적용하여 사법적 판단을 내린 바 있음.

다. 그러나 국회의원 김태규는 2026년 9월 30일 유튜브 채널인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석열은 내란 아니죠”, “전두환은 내란이 아닙니다”, “(법적 역사적 판단) 끝난 일은 아직 아니다”, “(전두환 내란수괴 사형선고는)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등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전면 부정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음.

라. 이는 내란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역사적 단죄를 왜곡하는 ‘역사 부정’을 넘어 국가를 전복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독재자를 비호하고,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옹호하는 망발임. 또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법치 수호의 책임을 지닌 국회의원으로서는 사법부의 확정판결과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임.

마. 또한 국민 통합을 도모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채,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과 유가족,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반역사적 궤변으로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임.

이러한 행태를 종합할 때, 국회의원 김태규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는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46조를 위반하였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회법」 제24조, 제25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 제2조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는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음.

이에 국회의원으로서는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민주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극우 선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김태규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